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3. 제출이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안 제1조~제3조)

나. 출자방법 및 비율, 사업자금 차입 (안 제4조, 제5조)

다. 주주권 행사, 이사 지명권, 정기보고 (안 제6조~제8조)

라. 정관, 설립등기, 공무원 파견·겸임, 준용 규정 (안 제9조~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완료

6.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⁴⁾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 설립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가 가능함에 따라
- 정부 공모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설립·운영,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출함

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 (입법 절차 이행)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 (각 조문 검토)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으로 구성된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SPC⁵⁾)의 설립, 운영,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본칙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23년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기업의 자금·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방식으로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책 펀드로 ①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후 ②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자펀드를 결성하여 ③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 구조를 이룸.

5)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특수목적법인(회사)을 뜻함.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은 대부분 모회사가 있으며, 어떤 회사 또는 집단들이 자기의 채무상태나 법률 관계 등과 독립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회사)를 만들어 이용하는 형태. 특정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새롭게 설립됨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특수목적법인(SPC)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데 유리할 수 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 및 사업 범위를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는 출자방법, 단양군(이하 군)과의 초기 출자비율, 법인의 증자 및 자펀드 출자 근거 규정을 둠
다만, 제5항에 기대된 ‘자펀드’ 용어 대한 정의 및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에서는 법인의 사업자금 차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차입 가능성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6조에서는 주주권 행사 방법을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의 법인 이사회 이사 지명권이 규정됨
- 안 제8조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사업관리를 위한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사업 추진 상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의 관리·감독권한임
- 안 제9조에서는 법인 정관의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을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설립등기를 통한 법인 성립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법인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정부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정책자금으로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자펀드 조성 및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 사업 완수를 위해

- 도와 군이 출자하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 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법인과 사업의 운영에 대한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 지역개발 프로젝트(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의 사업성과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법인과 조율해 가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임
- 다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안 시행으로 수반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경우 출자금 규모(총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산출) 변동 가능성을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한 상태이나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24년 1월 모펀드 신청 시 1,133억원이었으며, '24. 6월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820억원으로 수정되어 출자금 규모는 추산이 가능하여 동 조례 제11조제4항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이에, 추산되는 출자금 규모와 출자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

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